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06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 김소희・김위상・고동진

김미애 · 엄태영 · 김상훈

성일종 • 주호영 • 김예지

이인선 · 김성원 · 김선교

박덕흠 · 김기웅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국무총리훈령인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자제가 권고되고 있음. 그러나현재 지침은 권고 수준으로, 실질적인 이행력 확보 수단이 없음.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종이와 플라스틱 등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증가하여 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음. 또한, 1회용품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며, 탄소 배출 증가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 금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정책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의 청사(공원·고궁 등 소관 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이 주 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1회용품(이하 "1회용품"이라 한다)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제5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이행실적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적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 제3조(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공원·고궁 등 소관 시설을 포함한다) 또
	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나 행사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5호에 따른 1회용품(이하
	#1회용품"이라 한다)을 사용하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야 한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u>7.</u> (생 략) ⑥ ~ ⑩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행실적
- 8. (현행 제7호와 같음)
- ⑥ ~ ⑩ (현행과 같음)